

미국의 초중등교육법 분석: 문헌정보 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the US -Focusing on the Conten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장 령 령(Lingling Zhang)*

박 주 현(Juhyeon Park)**

〈목 차〉

I. 서론	IV. 문헌정보 서비스의 내용 분석
II. 미국의 초중등교육법(ESEA)	1. TITLE I
1. 제정 배경과 특징	2. TITLE II
2. 아동 낙오 방지법(NCBL)	3. TITLE IV
III. 미국의 모든 학생의 성공법(ESSA)	4. 문헌정보 서비스의 개념과 조건
1. 제정 배경과 특징	5. 분석의 시사점
2. 구조와 목차	V. 결론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모든 학생 성공법’에 의해 재인증된 미국의 초중등교육법을 문헌정보 서비스의 관점에서 법률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헌정보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이 법에는 최초로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과 ‘학교 사서’가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도서관 프로그램’과 ‘학교 사서’를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 도서, 자원, 최신 자료, 기술, 도서관 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와 연계시키고 있어 미국의 초중등학교에서 문헌정보 서비스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는 학교 사서가 개인화된 학습 경험, 증거 기반 평가, 전문성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리터러시 및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문헌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접근성 강화, 사서교사 등의 문헌정보 서비스 업무 구체화, 학교 구성원과의 협력 강화, 증거 기반에 따른 교육 활동, 교육적 효과의 공유, 문헌정보 교육과정 개발을 논의하였다.

키워드: 리터러시, 교육 서비스, 사서교사, 디지털 리터러시, 독서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ESEA) of the U.S. reauthorized by the Every Student Succeeds Act in 2015 from the viewpoint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the first time, ESEA includes effective school library programs and school librarians, and links school library programs and school librarians with literacy, digital literacy, books, resources, up-to-date materials, technology, library services and educational services. It provides a financial and institutional bas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of the US to be more conducted. In addition, school librarians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personalized learning experiences, evidence-based assessment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in the law, so school librarians must provide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to students, staff, and parents in order to improve student achievement and digital literacy.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discussed strengthening access to the school library, specifying the work of the teacher-librarian's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strengthening collaboration with school members, educational activities based on evidence base, sharing educational effects and developing of library and information curriculum.

Keywords: Literacy, Education services, Teacher-librarians, Digital literacy, Reading education

* Lecturer,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puter Science, Shanghai Business School (s06303018@gmail.com) (제1저자)

** 건국초등학교 사서교사(parkjuhyun12@hanmail.net)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9년 2월 18일 •최초심사: 2019년 2월 28일 •게재확정: 2019년 3월 19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1), 357-380, 2019.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03.357]

I. 서론

근래에 사서들은 문헌정보학과와 관련된 법률안의 제정과 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법률이 행정과 재정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감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개인과 집단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학교도서관계도 최근 큰 변화가 있었다.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의무배치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2018년 8월 22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제5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학교마다 학교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3항에는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고교육법 제21조 제2항과 관련한 교사자격 기준[별표 2]에 제시된 사서교사 2급 자격기준과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과 관련한 사서의 자격요건[별표 3]에 제시된 2급 정사서 자격기준을 고려할 때,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부나 대학원의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이 초·중·고등학교마다 한 명씩 배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 2018.8.22.)은 모든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 실기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위와 같은 자격을 취득한 사서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두도록 강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률로서 의의가 있다.

초·중·고등학교에 사서교사를 두도록 한 강제조항은 사서교사 등의 역할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법률에 사서교사 등의 배치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던 경우, 사서교사 등이 아닌 사서 무자격자가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 등처럼 근무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하여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법제처 2014). 즉 누구나 사서교사 등처럼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학교구성원들이 사서교사 등의 역할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사서교사 등의 배치가 의무규정으로 바뀐 지금,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등이 있고 이들의 업무가 문헌정보 서비스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헌정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서교사 등이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헌정보 서비스의 차원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이나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에 제시된 문헌정보 서비스의 내용과 사서교사 등의 역할에 대한 내용은 부실한 편이다. 따라서 국외의 학교도서관 관련 법률을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는 국내의 학교도서관 관련법의 개정은 물론 문헌정보 서비스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사서교사 등의 역할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권은경(2004)과 이원숙(2011) 및 변우열(2017)은 외국의 학교도서관 관련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문헌정보 서비스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모두 일본의 학교도서관 관련법을 분석 내용으로 다루었다.

2015년 개정된 미국의 초·중·고교육법(ESEA: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에는 처음으로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과 ‘학교 사서(school librarians)¹⁾’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증거 기반 평가, 리터러시 및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문헌정보 서비스를 위해 연방의 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내에서 사서교사가 문헌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유용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초중등교육법의 제정배경,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2015년에 ‘모든 학생의 성공법(ESSA: Every Student Succeeds Act)’에 의해 재인증된 미국의 초중등교육법을 문헌정보 서비스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문헌정보 서비스의 내용과 정책을 개선하고 사서교사 등의 역할 수립과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미국의 초중등교육법(ESEA)

1. 제정 배경과 특징

가. 제정 배경

ESEA는 1965년 존슨 대통령(Lyndon, B. Johnson)에 의해 법률로 서명되었다. 그는 ‘완전한 교육 기회’는 ‘우리의 첫 번째 국가 목표’라고 주장하면서 빈곤계층이나 소수계층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ESEA를 통해 처음으로 연방이 재정지원이란 수단을 통하여 주정부의 교육 정책에 개입하였고 교육 결손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a). 연방정부는 ESEA의 TITLE I 을 통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지역 교육기관에 재정을 지원하였고, TITLE II를 통해 교과서 및 교육도구 구입과 학교도서관을 확충하는 데 재정을 지원하였다(주미대사관 교육관실 2007, 15).

나. 연방주의와 시민권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교육을 연방정부가 아닌 주와 개별 지역 교육기관이 관할하는 업무로 인식하여 왔으며, 교육부가 지역 교육에 대해 많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1) AASL(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은 2016년 그들의 성명서를 통해 “학교 사서”가 주 정부 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도 문헌정보학, 교육 및 기술 분야에서 학문적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프로그램에서 석사 학위나 동등한 학위를 소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하였다(AASL 2016b). 그리고 동일한 날의 또 다른 성명서를 통해 AASL은 “학교 사서”를 최소 주 정부의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고, 문헌정보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며 교육지도자이며 교사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설명하여(AASL 2016a) 학교 사서의 교육적 자질을 강조하였다. 또한 워싱턴주 등에서는 사서교사(teacher-librarian)를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연구는 각 주마다 학교 사서에 대한 자격기준이 다르다는 점과, 이 연구가 모든 주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의 기준을 제시한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조항을 분석하는 연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school librarian’을 ‘학교 사서’로 번역하였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0). 1965년 존슨 대통령이 ESEA에 서명한 이후에도 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이 위헌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며, NCLB 도입에 따라 주정부가 연방 교육 기금의 지원을 거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또 전미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는 주정부의 교육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연방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엄철현 2005, 67). 이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이나 지방교육자치와는 다른 연방주의(federalism)를 기본적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최상단의 법률적 지위를 가진 연방 헌법에 따라 중앙정부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갖고 나머지 권한은 주에 귀속된다고 보는 연방주의에 대한 헌법의 원리에 기인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10조는 “이 헌법에 의하여 미합중국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게 금지되지 않은 권력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미국 연방헌법에 ‘교육’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노기호 2007, 37). 이러한 이유로 주와 특정 단체들은 교육에 관한 법적 권한이 주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반면 미국 연방정부는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존슨 대통령은 1867년도에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를 신설하는 법률에 서명하였으나 지방 교육 권한의 문제로 이 새로운 교육부는 1868년에 교육청(Office of Education)으로 강등되었다. 그러던 중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의 성공적인 발사로 1960년대에는 연방 교육 기금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1965년에 교육의 질과 교육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었고 사회적 약자, 소수민족, 비영어권 학생 등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국가적 노력이 계속 추진되었다. 그리고 1979년에는 의회에서 교육부 조직법이 통과되었고 1980년에 교육부의 업무가 시작되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b).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지와 시민으로서의 평등권이었다. 연방헌법 제1조 제8절 제1항에서는 연방 의회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고 있는 시민권(Civil rights)과 그 밖의 다른 조항에 대한 해석과 대법원 판례 및 대통령 선거공약과 이행을 통해 연방정부는 개별 주의 교육에 관여하였다(주미대사관 교육관실 2007, 7). ESEA도 제정될 때부터 시민권 법이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a; 2018b).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연방헌법에 직접적으로 교육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교육부는 연방정부의 교육재정 보조금의 집행을 통해 교육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미국의 초·중·등교육법은 재정지원과 관련된 법률이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문제에 개입하고자 하였고 NCLB를 통해 주 및 지역 교육의 문제와 정책에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

다. ESEA의 개정

미국 연방의회는 시대적 요구사항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ESEA를 재인가하는 방식으로 ESEA를 개정해 오고 있다. ESEA가 재인가된 주요한 법률로는 1981년 레이건 행정

부의 교육통합 및 발전법(Education Consolidation and Improvement Act), 1994년 클린턴 행정부의 미국 학교 발전법(Improving America's Schools Act), 2001년 조지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의 아동 낙오 방지법이 있으며,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모든 학생 성공법으로 ESEA는 재인가되었다.

2. 아동 낙오 방지법(NCLB)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이 2001년에 서명한 NCLB법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 출신의 학생들에게 공평한(equal)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책무성 강화, 선택권 부여, 유연성 제공, 효율성이 증명된 교수방법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NCLB 2002).

NCLB는 각 주가 주요 과목의 학업성취 기준을 정하고 학생들이 이러한 기준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개별 학교는 경제적 약자, 장애, 영어 학습자, 흑인, 아시아계 미국인, 백인, 히스패닉, 아메리칸 인디언 학생을 포함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취합하여 보고하고, 기준 미달 교원의 비율 등 교원의 자질, 연도별 적정 학업향상도(AYP: adequate yearly Progress)에 관한 정보를 지역사회와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2013-2014학년도까지 모든 학생들이 주의 AYP에 근거하여 영어(reading)와 수학에서 능숙한(proficient)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였다(NCLB 2002, Sec. 1111, Sec. 1116). 이에 따라 2005-2006학년도까지 각 주는 3학년에서 8학년 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성취도는 매년 측정되며, 10학년에서 12학년 재학 중에는 1회 이상 영어와 수학 성취도가 측정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7-2008학년도까지 각 주는 3-5학년, 6-9학년, 10-12학년 재학 중에 적어도 한 번은 과학 성취도를 측정하도록 요구하였다.

학교들은 주정부가 정한 AYP 목표를 해마다 달성해야 하고, 연간 성취 결과는 이전 연도와 비교되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4). 만약 공립학교가 주 정부의 AYP의 기준에 2년 연속 미달하여 '개선이 필요한 학교'로 지정되는 경우, 그 학교의 학생들은 학군내에서 다른 공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교통편을 제공받으며, 3년 연속 미달하면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교가 5년간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학교는 차터스쿨로 전환하거나 교직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교체하거나 학교운동을 외부에 위탁하는 등을 조치를 받도록 하였다(NCLB 2002, Sec. 1118.).

NCLB는 주에 교육권한에 대한 융통성도 제공하였다. 각 주들은 2014년까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어 수준의 기준, 평가시점의 결정, AYP, 기존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한 기준은 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NCLB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는 독서를 통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과학적 연구에 근거한 포괄적 독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주에게 '독서 처음 계획(Reading

First initiative)’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저학년 학생들의 읽기 프로그램(Early Reading First)에 자금 수여를 허가한 것이다.

그러나 NCLB의 시험 중심 정책은 모든 학생을 특정 교과목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시키고, 학업성과만을 재정지원과 연계시킴으로써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NCLB 체제하에서 2011년에는 절반 이상의 학교가 실패학교로 전락하여 교육예산 삭감의 불이익을 받았다. 이러한 NCLB의 학업성과중심 정책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왜곡시켜 일부 학교에서는 표준시험 과목이 아닌 음악, 역사, 체육수업 등을 축소시키거나 폐지하거나 관련교사를 타 과목 교사로 전환시키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학교 평균점수를 깎아 내리는 성적 낮은 학생들의 중도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다(박윤주 2017, 53, 56).

교육목표 측정지표인 AYP를 달성하지 못하는 주가 증가하면서 2012년 오바마 정부는 면책권부여제도를 도입하여 2014년까지의 100% 능숙도 요건을 폐지하고 각 주들이 상황에 맞게 성취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기준 미달 주에 대하여도 삭감 없는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NCLB의 기본 원칙을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제도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영어와 수학의 능숙도 비율은 전체 50% 미만이었고 1990년대 대비 오히려 인종간 학업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2015년 수학점수는 1990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하락하였다. 또한 42개의 주가 성적기준 미달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부터 면책권을 부여받는 등 NCLB 제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박윤주 2017, 55; 염철현 2016, 87).

Ⅲ. 미국의 모든 학생의 성공법(ESSA)

1. 제정 배경과 특징

NCLB 법은 2007년에 개정될 예정이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NCLB가 제시한 학업성취도 향상에 대한 요구사항은 주와 지역 교육기관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모든 학생들이 대학과 그들이 갖게 될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목표에 초점을 맞춘 더 나은 법을 만들자는 취지로 ESSA를 통해 초·중등교육법을 재인증하였다. ESSA에 제시된 주요한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a; 주미대사관 교육관실 2007).

- ① ESSA는 사회적 약자들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high-need students)을 위한 중요한 보호정책을 유지시킴으로써 형평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 ② ESSA는 처음으로 미국의 모든 학생들이 그들이 다니는 대학이나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높은 학업 표준을 배워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각 주는 영어, 수학, 과학 과목에서 도전적인 학업 표준들을 채택해야 했다. 이때 각 주가 공통 핵심 표준(CCSS: Common Core State Standards)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반드시 CCSS를 활용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다.

- ③ ESSA는 학생들이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진행사항을 측정하는 연간 주 전체 평가를 통해 중요한 정보가 교육자, 가족, 학생 및 지역 사회에 제공되도록 요구하였다. ESSA는 3-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매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총 1회에 걸쳐 주차원에서 영어와 수학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학교 전체의 시험 결과와 학생 하위그룹별 시험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시험 참여율은 9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NCLB와는 다르게 컴퓨터적용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④ ESSA는 지역의 리더와 교육자가 개발한 증거 기반 및 장소 기반(place-based) 개입을 포함한 지역 혁신을 지원하고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학교 사서의 전문성 개발에 연방 정부의 자금이 사용되도록 허용하였다.
- ⑤ ESSA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고 개별 학교의 졸업률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NCLB에 제시된 AYP와 100% 능숙도 요구사항이 폐지되고 연방정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권한이 주정부로 대폭 위임되었다. ESSA는 포괄적인 예산지원체제로 전환하고, 예산 권한을 주정부로 위임하였다. 대신 주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만불 이상 지원 받는 지역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평가를 통한 증거 기반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ESSA는 주 교육기관이 하위 5%의 성취도에 해당하는 학교 및 졸업률이 67% 이하인 고등학교들을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4년 연속으로 개선에 실패하면 주는 교육의 계획을 통해 중재에 착수해야 하며 이 때 주는 교장 등을 해고하거나 해당학교를 차터스쿨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⑥ ESSA에서는 핵심 학문 과목들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우리나라의 범교과 학습과 비슷한 ‘다방면에 걸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으며, ESSA에 학교 도서관 프로그램, 학교 사서, 디지털 리더러시, 도서관 서비스, 도서, 자원, 학교도서관 접근 등이 명시되는 등 문헌정보 서비스의 내용이 NCLB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되어 서술되었다.

2. 구조와 목차

ESSA는 제목, 목차, 참고 사항, 발효일, 개정된 ESEA의 목차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ESEA의 목차에 제시된 개별 항목에서 규정된다. 이 법에 제시된 목차는 TITLE, Part, Subpart, Section(sec.)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SSA는 114대 미 의회에서 95번째로 제정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1호)

된 공공법률로 제목은 “Every Student Succeeds Act”이다. ESSA에 의해 재인증된 ESEA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표 1> ESSA에 의해 재인증된 ESEA의 목차

TITLE I	사회적 약자의 학업 성취도 향상
PART A	지역 교육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기본 프로그램 향상
Subpart 1	기본 프로그램 요구사항
Subpart 2	할당 금액
PART B	주 평가 보조금
PART C	이민자 아이들 교육
PART D	도외시된, 비행의, 또는 위험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방과 개입 프로그램
Subpart 1	주정부 프로그램
Subpart 2	지역정부 프로그램
Subpart 3	일반 조항
PART E	공평한 학생 1인당 기금의 유연성
PART F	일반 조항
TITLE II	양질의 교사, 교장 및 그 밖의 학교 리더의 준비, 연수 및 채용
PART A	효과적인 교육 지원
PART B	국가적 활동(NATIONAL ACTIVITIES)
Subpart 1	교사와 학교 리더 보상(incentive) 프로그램
Subpart 2	모두를 위한 리터러시 교육, 국민을 위한 결실
Subpart 3	미국 역사 및 공민학 교육
Subpart 4	국가의 중요한 프로그램
PART C	일반 조항
TITLE III	영어 학습자와 이주민 학생들을 위한 언어 교육
PART A	영어 습득, 언어 향상과 학업성취 법
Subpart 1	영어 습득과 언어 향상을 위한 보조금 및 지역보조금
Subpart 2	책임 및 행정
Subpart 3	국가적 활동
PART B	일반 조항
TITLE IV	21세기 학교
PART A	학생 지원 및 학업 향상 보조금
Subpart 1	학생 지원 및 학업 향상 보조금
Subpart 2	인터넷 안전
PART B	21세기 지역사회 학습 센터
PART C	양질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s)를 통한 기회 확대
PART D	마그넷 학교(magnet schools) 지원
PART E	교육 프로그램에 가정 참여
PART F	국가적 활동
Subpart 1	교육 혁신과 연구
Subpart 2	학교 성공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Subpart 3	학교 안전을 위한 국가적 활동
Subpart 4	학업 성취
TITLE V	융통성과 책임
PART A	주 및 지역 교육기관을 위한 기금 이전
PART B	시골의 교육 계획
Subpart 1	작은 시골 학교 성취 프로그램

Subpart 2	시골 저소득 학교 프로그램
Subpart 3	일반 조항
PART C	일반 조항
TITLE VI	아메리카 원주민, 하와이 및 알래스카 원주민 교육
PART A	아메리카 원주민 교육
Subpart 1	지역 교육기관에 수여되는 기준에 따른 교부금(formula grants)
Subpart 2	아메리카 원주민 어린이의 교육적 기회 향상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Subpart 3	국가적 활동
Subpart 4	연방 행정
Subpart 5	정의; 세출 권한
PART B	하와이 원주민 교육
PART C	알래스카 원주민 교육
TITLE VII	재정 원조
TITLE VIII	일반 조항
PART A	정의
PART B	행정 및 기타 기금 사용의 융통성
PART C	프로그램의 협조; 강화된 주 및 지역 계획 및 신청서
PART D	포기(waivers)
PART F	동일한 조항
Subpart 1	사립 학교
Subpart 2	다른 조항
Subpart 3	교사의 법적책임 보호
Subpart 4	총 소지
Subpart 5	담배 연기
PART G	평가

ESSA에서 문헌정보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은 크게 TITLE I, II, IV에 제시되어 있다. TITLE I은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한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에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TITLE II는 효과적인 교육 지원과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사서의 전문성 강화와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에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TITLE IV에서는 다방면에 걸친 교육, 학교도서관 접근 등의 환경 개선, 정보기술의 효과적 활용 등을 포함한 학생지원 및 학업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IV. 문헌정보 서비스의 내용 분석

ESSA는 미국의 초중등교육, 평가, 기금 등을 다룬 연방법으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문헌정보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효과적인 학교도서관’과 ‘학교 사서’가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조항을 분석하고 ESSA에 제시된 문헌정보 서비스의 의미를 고찰한 뒤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TITLE I

TITLE I 은 주 및 지역 교육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기본 프로그램의 개선을 다룬 부분으로 TITLE I 에 따라 주는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역 교육기관은 지역 교부금을 지원받는 교육 활동들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TITLE I , PART A, Subpart 1에 제시된 문헌정보 서비스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TITLE I , PART A, Subpart 1에 제시된 문헌정보 서비스 내용

<p>TITLE I, Part A, Subpart 1, SEC. 1111. [20 U.S.C. 6311] 주 계획</p> <p>(a) 보조금(grants) 신청</p> <p>(1) 일반- 이 파트에 의거하여 교부금을 받기를 원하는 주는 주 교육기관이 장관에게 (A)(B)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p> <p>(A) 주 교육기관이 주지사..., 주 교육위원회..., 교사, 교장, 기타 학교 리더, 차터스쿨 리더, <u>전문 교육 지원 인력</u>, 보조교사, 관리자, 기타 직원, 학부모와의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u>협의(consultation)</u>에 의해 개발된</p> <p>(b) 계획 조항, -모든 어린이가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도전적인 주 학업 기준을 충족시키는 어린이와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린이 사이의 성취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각 지역 교육기관의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야 한다.</p> <p>(13) 지역 교육기관이 본 파트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금을 사용하기 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과 지역 교육 기관이 제공하기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여기에는 지역 교육 기관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u>디지털 리터러시를 개발하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u>이 포함될 수 있다.</p>
--

<표 2>에 제시된 조항에는 주와 지역 교육기관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 학교 사서와 협의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²⁾. 또한, 학생들에게 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ESSA는 학교들이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지역 교육기관이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지역 교육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률 조항은 학교 사서가 주와 지역 교육기관의 주요한 협력 대상이라는 점과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도 학교도서관의 진흥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를 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지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업무는 기술되어 있지만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직접적인 문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시대적 사회적

2) TITLE VIII, PART A, Sec. 8101에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ESSA에서 기술된 ‘전문 교육 지원 인력’에 자격을 갖춘 ‘학교 사서’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TITLE I, Part A, Subpart 1, SEC. 1111과 SEC. 1112에서 기술된 ‘전문 교육 지원 인력’에는 학교 사서가 포함된다.

변화에 따라 자료의 개념에 디지털 자료가 포함되고 독서의 개념에 디지털 독서가 포함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초중등교육법은 학교도서관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디지털 독서와 디지털 정보 등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한 내용 영역이 표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TITLE II

TITLE II는 전반적으로 학교 사서의 연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PART A에서는 학교 사서의 교육 지원을 PART B에서는 세부적 활동에 따른 지원을 다루고 있다.

ESSA의 TITLE II, PART A, Sec. 2101과 Sec. 2103에서는 주와 지역 교육기관이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과 학교 사서의 전문성 개발에 기금이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ITLE II, Part A에 제시된 문헌정보 서비스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TITLE II, Part A에 제시된 문헌정보 서비스 내용

<p>TITLE II, PART A, SEC. 2101. [20 U.S.C. 6611] 주에 제공하는 기금 기준(formula) (c) 주의 기금 사용, (4) 주의 활동 (B) 주의 활동의 유형.— 이 호에 서술된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xiii)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instructional services) 지원 SEC. 2103. [20 U.S.C. 6613] 지역의 기금 사용 (b) 활동의 유형—본 항에 서술된 프로그램과 활동은 (3) 다른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포함할 수 있다. (K)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p>
--

NCLB의 TITLE II, Part A을 통해 제공하던 기금은 주로 교원을 위한 전문성 개발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른 교육 지원 담당자들이 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ESSA는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이 사용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학교 사서가 전문성 개발을 위해 연방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ALA Washington Office 2016, 2). 또한, TITLE II의 SEC. 2102에서는 지역 교육기관이 TITLE II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학교 사서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역 교육 계획서 작성에 학교 사서와의 협이가 중요한 요구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TITLE II, Part B, Subpart 2의 제목은 ‘모두를 위한 리터러시 교육, 국민을 위한 결실 (LEARN: Literacy Education for All, results for the Nation)’로 LEARN의 목적은 유치원 교육(7살)에서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의 읽기 및 쓰기에서 양질의 교육 및 효과적인 전

락을 통해 읽기(reading) 및 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가 포괄적인 리터러시 교육 계획을 개발하고, 수정하고 갱신시키도록 하는 데 연방 자금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주가 조기 아동 교육 프로그램, 지역 교육기관 및 그들의 공사립 파트너에게 맞춤형 보조금을 제공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포괄적인 리터러시 교육을 보장하는 증거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제시된 리터러시의 의미는 읽기와 쓰기이며, 리터러시 교육에는 빈번한 독서, 양질의 인쇄 자료, 평가, 독서 동기, 교사협력 그리고 복잡한 인쇄물과 디지털 주제를 찾고(navigate), 이해하고, 쓸 수 있는 능력 개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ESEA 2015, Sec. 2221).

LEARN은 유치원생부터 12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중점을 둔 지역 교부금이 학교 사서 등의 교직원에게 양질의 종합적인 리터러시 교육 계획을 지원, 개발, 관리, 평가하는 연수를 포함하여 이들의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SEC. 2224에서는 학교 사서가 유치원생부터 12학년 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에 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학교 사서의 전문성 개발은 물론 학교 사서가 학부모나 교직원에게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데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사서는 포괄적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교사와 만나고, 계획을 세우고 협력하는 데 지역 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 ESSA는 TITLE II, PART B, Subpart 2, Sec. 2224에 제시된 문헌정보 서비스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TITLE II, PART B, Subpart 2, Sec. 2224에 제시된 문헌정보 서비스 내용

<p>TITLE II, PART B, Subpart 2, SEC. 2224. [20 U.S.C. 6644] 유치원부터 12학년의 리터러시를 지원하는 자격있는 기관의 지역 교부금 (c) 유치원부터 5학년을 위한 지역의 기금 사용-이 조항(section)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는 자격이 있는 단체는(entity)는 유치원생부터 5학년 아동들과 관련된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보조금을 사용해야 한다. (2) 교사, ..., 전문 교육 지원 인력, 학교 사서, ...,에게 양질의 전문성 개발 기회 제공. (3) 교장, 전문 교육 지원 인력, 그 밖의 지역 교육 기관 직원이 유치원생에서부터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리터러시 계획을 지원, 개발, 관리, 평가하도록 하는 연수 (5) 리터러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을 참여시키고 가족에게 리터러시 경험과 실천을 장려하는 것 (d) 6학년에서 12학년을 위한 지역 교육기관의 자금 사용 -이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는 자격이 있는 단체는 6학년에서 12학년 아동들과 관련된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보조금을 사용해야한다 : (2) 6학년에서 12학년 아동을 위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리터러시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 개발, 관리 및 평가하는 교장, 전문 교육 지원 인력, 학교 사서 및 기타 지역 교육기관 직원의 연수 (e) 허용되는 사용 -이 조항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받는 자격있는 단체는 (c) 및 (d)에 서술 된 활동들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유치원부터 12학년의 아동과 관련된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6) 교사(그리고 학교 사서나 전문 교육 지원 인력과 같은 적절한 다른 리터러시 직원)가 포괄적인 리터러시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해 만나는 시간의 제공</p>
--

LEARN은 경쟁이 있는 연방 프로그램(competitive federal program)으로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교부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교 사서들만이 그 교부금을 사용할 수는 없다. 이는 학교 사서가 학생들의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

당하는 관계자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LEARN에서는 TITLE I 에서와는 다르게 전문 교육 지원 인력과 구분하여 학교 사서를 독립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 사서를 적절한 리터러시 직원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학교 사서가 독서(reading)를 포함하여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서도 전문가로 인식되며 나아가 리터러시 정의에 포함된 활동들을 통해 아동의 리터러시 향상에도 책임을 갖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Section 2226에서는 학교 사서의 전문성 개발, 도서 및 높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high-need schools)에 대한 최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는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데 기금이 사용되는 것을 허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ITLE II, PART B, Subpart 2, Sec 2226에 제시된 문헌정보 서비스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TITLE II, PART B, Subpart 2, Sec. 2226에 제시된 문헌정보 서비스 내용

TITLE II, PART B, Subpart 2 SEC. 2226. [20 U.S.C. 6646] 리터러시에 대한 혁신적 접근법 (a) 일반 - section 2201(2)에 따라 예비된 금액에서, 장관은 (1)-(3)을 포함하여 저소득층의 리터러시 역량(literacy skills) 개발을 지원하는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에 기초하여(on a competitive basis) 자격있는 단체에 보조금, 계약(contracts) 또는 협력 협약(cooperative agreements)을 수여 할 수 있다. (1) 학교 사서에 대한 전문성 개발, 도서, 높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것 (2) ..., 부모에게 아동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도서 제공, 영유아에게 책 읽어주기 권장 등 ... (3) 독서 동기, 독서 능력(performance), 독서 빈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저소득 집단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표 5>에 제시된 내용은 아동의 리터러시 향상을 위하여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학교 사서가 교육적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하였던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ESSA의 Sec. 2226 제시된 내용은 향후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사서교사 등에 대한 전문성 개발 연수 제공이나 최신의 자료에 대한 정보 제공, 특정한 학생 집단의 독서 능력 향상에 적합한 도서 정보 제공과 같은 내용이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ITLE II, Part B, Subpart 3, Section 2232에는 미국 역사 교육과 사상(teaching)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미국 역사와 공민학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ESSA에는 '자격있는 기관'을 역사적 방법론이나 미국 역사 및 공민학 사상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된 고등 교육 또는 비영리 교육 기관, 박물관, 도서관 또는 연구 센터의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ESSA의 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연방정부의 기금을 지원 받아 미국의 역사와 권

리 장진을 포함한 헌법의 원칙 등을 학생에게 교육할 수 있다. TITLE II, PART B, Subpart 3, SEC. 2232에 제시된 문헌정보 서비스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TITLE II, PART B, Subpart 3, SEC. 2232에 제시된 문헌정보 서비스 내용

<p>TITLE II, PART B, Subpart 3, SEC. 2232. [20 U.S.C. 6662] 미국역사와 공민학을 위한 대통령 및 의회 아카데미 (c) 자격있는 기관-본 조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기관"라는 용어는 (1)...을(를) 의미한다. (1) 역사적 방법론(historical methodology)이나 미국역사나 공민학(civics) 교육에서 전문적 지식이 입증된 고등 교육 기관 또는 비영리 교육 단체, 박물관, 도서관, 연구 센터</p>

3. TITLE IV

TITLE IV, Part A에서는 주와 지역 교육기관이 지역적으로 설계된 우선순위에 따라 연방 정부의 기금을 학생을 지원하고 학업을 강화시키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TITLE IV, Part A, Sec. 4101은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서의 활동을 허가한다. 이 Sec. 4101에 제시된 문헌정보 서비스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TITLE IV, Part A, Subpart 1, Sec. 4101에 제시된 문헌정보 서비스 내용

<p>TITLE IV, Part A, Subpart 1- 학생 지원 및 학업 강화 보조금 SEC. 4101. [20 U.S.C. 7111] 목적 이 subpart의 목적은 (1)(2)(3)하도록 주, 지역 교육 기관,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역량(capacity)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1) 모든 학생들에게 <u>다방면에 걸친 교육을 제공</u> (2) 학생 학습을 위한 <u>환경을 개선</u> (3) 모든 학생의 <u>학업성취도와 디지털 리터러시</u>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u>기술 사용을 개선</u></p>

다방면에 걸친 교육은 국내의 범교과 학습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교과목 이외의 다양한 주제 분야의 교육을 의미하는 다방면에 걸친 교육은 정보화 및 정보 윤리, 여가 활용, 다문화, 지적 재산권, 미디어, 의사소통·토론중심, 논술교육 등의 2009 개정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 주제와 유사하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국가차원에서 세분화된 교과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주제를 새로운 영역의 교과로 승인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문헌정보학의 교육 내용과 관련된 ‘독서’는 고등학교 국어과의 일반 선택과목에 포함되어 있으며(교육부 2015a), ‘정보’는 중학교에서 공통과목으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교육부 2015b). 게다가 2015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가 10개의 범주로 축소되어(교육부 2015c), 사서교사가 범교과 학습 주제와 연관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할 수 있는 영역도 축소되었다.

학교 사서가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학습 및 기술 교육 전문가로 서술되고

있는 ESSA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사서교사 등의 역할에 이러한 내용들을 서술하고 더불어 다방면에 걸친 교육 주제나 범교과 학습 주제로 문헌정보라는 새로운 학습 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독서 및 정보 리터러시와 기술을 융합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내용 요소가 제시된 문헌정보 교육과정은 사서교사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추후 선택 교과로의 편입에 있어서도 타주제의 간섭을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TITLE IV, PART A, Sec. 4102에서 등장하는 디지털 학습(digital learning)은 ESSA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학교 사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연관된다(Johns, Dachel 2017, 8). SEC. 4102에 제시된 디지털 학습에 대한 정의는 <표 8>과 같다.

<표 8> TITLE IV, PART A, Subpart 1, SEC. 4102에 제시된 디지털 학습에 대한 정의

<p>TITLE IV, PART A, Subpart 1, SEC. 4102. [20 U.S.C. 7112] 정의</p> <p>(3) 디지털 학습 - "디지털 학습"이라는 용어는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u>기술(technology)</u>을 사용하고 아래에 제시된 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도구와 실습(practices)을 포함하는 모든 교육 관행(practice)을 의미한다.</p> <p>(A) 학생들이 학습 내용(academic content)에 참여시키는 쌍방향 학습 자원, <u>디지털 학습 콘텐츠</u>(공개적으로 허가된 콘텐츠를 포함 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또는 시뮬레이션</p> <p>(B)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u>주요 정보원(primary source)</u> 문서에 대한 접근</p> <p>(C) 학습을 개인화하고 목표에 따른 보충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u>데이터 및 정보의 사용</u>;</p> <p>(D) 온라인 및 컴퓨터 기반 평가</p> <p>(E) 풍부한 <u>협력(collaboration)</u> 및 <u>의사소통</u>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 환경으로, 여기에는 콘텐츠 전문가 및 또래와의 학생 협력이 포함될 수 있다.</p> <p>(F) 하이브리드 또는 <u>혼합 학습(blended learning)</u>으로 이것은 학교 또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장소에서 직접 강사의 감독하에 수행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 시간, 장소, 경로 또는 속도에 따라 학생 제어의 일부 요소가 있는 온라인 교육 전달을 통해 이루어진다.</p> <p>(G) 농촌 또는 외딴 지역의 학생들이 온라인 강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p>

<표 8>에 제시된 디지털 학습은 디지털 학습 콘텐츠 접속,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나 주요 정보원 접근, 데이터 및 정보의 사용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과 관련하여 정의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에도 학교도서관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서비스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디지털 학습 기능이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 디지털 학습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 시설과 자료의 기준 등에는 디지털 매체에 대한 기준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Sec. 4102에 제시된 내용은 학교도서관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디지털 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학습 콘텐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주요 정보원 문서 접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술되고 디지털 매체에 대한 기준이 추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ITLE IV, Part A, Sec. 4104에서는 주가 지역 교육기관이 적절한 "학교도서관 접근"을 포함하는 기술에 의해 지원되는 개인화되고 엄격한 학습 경험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는 프

로그림과 활동을 제공하도록 돕는 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예를 들어 Sec. 4104에 따라 자격이 있는 학교에서는 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태블릿과 전자책을 구입하여 학생들이 교사와 학교 사서 사이에서 개발된 온라인 강의와 교육에 참여시키거나 선정된 장서와 웹 자원에 접근하게 할 수 있다(Johns and Kachel 2017, 10). 또한, ESSA는 추가 지역 교육기관이 교육과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 사서 및 다른 교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TITLE IV, PART A, Subpart 1, SEC. 4104에 제시된 문헌정보 서비스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TITLE IV, PART A, Subpart 1, SEC. 4104에 제시된 문헌정보 서비스 내용

<p>TITLE IV, PART A, Subpart 1, SEC. 4104. [20 U.S.C. 7114] 주의 기금 사용</p> <p>(b) 주 활동—section 4103에 따라 할당을 받은 각 주는 본 하위절(subpart)의 목적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해 (a)(3)조항(subsection)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금을 사용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p> <p>(3) 지역 교육기관이 (C)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p> <p>(C) (i)... 기술에 의해 지원되는 개인화되고 엄격한 학습 경험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키는</p> <p>(i) 지역 교육 기관이 (I)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 교육기관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p> <p>(I) 기술 인프라와 접근 유형에는 컴퓨터 장치, 학교도서관 접근(access to school libraries), 인터넷 연결,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관련 네트워크 인프라 및 데이터 보안이 포함되며, 지역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기술 인프라와 접근 유형을 포함하는 기술 준비 요구(technology readiness needs)을 확인하고 해결하는,</p> <p>(v) 교육과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사, 보조교사, 학교 사서, 미디어 직원, 전문 교육 지원 인력, 관리자에게 효과적인 기술 통합을 포함하여 효과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지식과 역량(skills)을 제공함으로써</p>
--

TITLE IV, PART A, Sec. 4106에는 3만 달러 이상의 정액 교부금을 지원받는 모든 지역 교육기관은 요구 분석(needs assessment)을 실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TITLE IV, PART A, Sec. 4106에 제시된 문헌정보 서비스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TITLE IV, PART A, Sec. 4106에 제시된 문헌정보 서비스 내용

<p>SEC. 4106. [20 U.S.C. 7116] 지역 교육 서비스 신청서</p> <p>(d) 요구 분석</p> <p>(1) 일반적으로—(2)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p> <p>이 subpart에서 할당된 기금을 받기 전에 이 subpart에서 제공받기로 제안된 지역 교육기관 또는 컨소시엄은 (A)(B)(C)의 개선을 위한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요구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p> <p>(A) 모든 학생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교육으로의 접근과 기회</p> <p>(B) 건강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학생 학습에 대한 학교 분위기</p> <p>(C) 데이터와 기술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기술과 전문성 개발에 의해 지원되는 개인화된 학습 경험에 대한 접근성</p> <p>(2) 예외—4105(a)항에 의거하여 지원금을 3만 달러 이하로 받는 지역 교육기관은 (1)항의 포괄적인 요구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p>

<표 10>은 개인화된 학습 경험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요구 분석에 포함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화되고 엄격한 학습 경험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데

학교도서관 접근이 포함되어 있으며(Sec. 4104), Sec. 4106에 데이터와 기술의 사용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교육 서비스 신청서에 포함되는 요구 분석의 내용에는 학교 사서의 역할과 관련된 디지털, 기술,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Sec. 4106에 제시된 효과적인 기술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학습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Sec. 4109) 이들 내용들도 요구 분석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교육기관이 그들의 신청서를 개발할 때 학교 사서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Sec. 4106) 요구 분석은 학교 사서의 역할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개인화된 학습 경험에 대한 접근은 법에 제시된 필수적인 요구사항이지만 개인화된 학습 경험에 대한 접근에 학교도서관으로의 접근을 포함하느냐의 여부는 선택사항이다. 이는 지역 교육기관에서 이 항목으로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에 기금을 지원할 수도 있으며, 이 항목의 예산 집행 계획에 학교 사서의 문헌정보 서비스 활동을 포함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4. 문헌정보 서비스의 개념과 조건

ESSA에서 서비스는 Section에서만 8번이나 등장한다. 이러한 Section중 하나인 아동 서비스는 “건강·보육·교육·도서관 서비스(library services)를 정기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연방정부, 주, 지역 교육기관에 의해 도서관이 기금을 지원받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ESSA에 제시된 서비스를 종합하면, 서비스는 활동, 프로그램, 상담, 전략, 교육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비, 수수료 등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다. 서비스는 ‘제공’이 핵심이 되는 단어로 제공자와 수여자가 있고, 일반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데 필요한 준비과정과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진행과정 및 평가나 피드백과 같은 진행후 과정도 포함된다.

교육도 제공자와 수여자가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식이나 능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ESSA에서는 교육과정이나 평가 등의 제공을 서비스로 표현하고 있다. Sec. 2101과 Sec. 2103에서는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에 의해 교육 서비스(instructional services)가 제공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SEC. 8101에서는 전문 교육 지원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문 교육 지원 서비스라고 규정하여 서비스의 개념이 특정한 인력의 역할과도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SSA에서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리터러시 및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도서, 자원, 자료, 디지털 학습 제공이 학교 사서의 역할이나 책임과 관련되어 서술되어 있다고 할 때, 학교 사서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는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포괄하는 문헌정보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SSA에서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이라는 문구는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ESSA에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AASL(2016a)은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이 자격있는 학교 사서를 보유하고 개인화된 학습 환경을 제

공하며 모든 학생에게 균형 잡힌 교육을 보장 할 수 있는 공평한 자원을 제공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ESSA에 제시된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을 <표 11>과 같이 정의하였다.

<표 11> AASL(2016a)의 성명서에 제시된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

<p>대학, 직업 및 지역 사회 준비의 기본 요소인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정부의 자격을 받은 a,b,c 학교 사서를 포함한 적절한 직원이 있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교육 지도자이자 교사인 b. 디지털 학습, 참여 학습, 탐구 학습, 기술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개발을 지원하는 c. 지도와 동기가 부여되는 독서 계획(initiatives)을 통해 리터러시 경험을 지원하고 보충하고 향상시키는 2. 라이선스가 공개된 교육 자료의 수서를 포함하여 최신의 디지털 및 인쇄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3. 정기적인 전문성 개발과 교실 교사와 학교 사서간의 협력을 제공한다.

<표 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AASL은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이 자격이 있는 학교 사서에 의해 디지털 학습, 탐구 학습, 기술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리터러시와 같은 구체적인 학습 내용과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AASL에 제시된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이 자격이 있는 학교 사서에 의해 운영되고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포괄한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때, ESSA에 제시된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을 문헌정보 서비스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ESSA에서는 문헌정보 서비스의 조건으로 ‘증거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즉 주, 지역 교육 기관과 학교는 <표 12>와 같이 증거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 12> TITLE IV, PART A, Sec. 4102에 제시된 증거 기반의 내용

<p>SEC. 4102. [20 U.S.C. 7112] 정의</p> <p>(21) 증거 기반(EVIDENCE-BASED)</p> <p>(A) 일반적으로</p> <p>(B)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주, 지역 교육기관 또는 학교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증거 기반"이라는 용어는 (i) (ii) 활동, 전략 또는 개입을 의미한다.</p> <p>(i) (I)(II)(III)에 기반하여 학생의 성취도(student outcomes)나 관련된 성취도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는</p> <p>(I) 적어도 1개의 잘 설계되고 잘 실행된 실험연구로부터의 강력한 증거</p> <p>(II) 적어도 1개의 잘 설계되고 잘 실행된 준실험연구로부터의 적당한(moderate) 증거</p> <p>(III) 선택(표본선정) 편향에 대한 통계적 통제와 함께, 적어도 1개의 잘 설계되고 잘 실행된 상관연구로부터의 가능성 있는 증거</p> <p>(ii)(I) 그러한 활동, 전략 또는 개입이 학생의 성취도나 다른 관련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u>공정적인 평가</u> 또는 <u>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근거(rationale)을 보여주는</u></p> <p>(II) 그러한 활동, 전략 또는 개입의 효과를 조사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포함하는</p> <p>(B) 본 법에 따라 부여된 특정(specific) 활동에 대한 정의 - section 1003에 의거하여 개입이나 개선 활동 또는 전략과 관련하여 "증거 기반"이 사용될 때, "증거 기반"은 (A)(i)항의 (I), (II) 또는 (III)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주, 지역 교육기관 또는 학교의 활동, 전략이나 개입을 의미한다.</p>
--

<표 12>에 제시된 증거 기반은 국가의 재정이 투입된 활동에 따라 학생들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을 요구한다. 이러한 ESSA의

증거 기반 요구는 문헌정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성과 측정과 그에 따른 결과가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사서교사 등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증거에 기반한 성과를 측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사서교사 등의 업무를 연구와 연결 짓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서교사가 교육적 활동과 전략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분석의 시사점

미국 초중등교육법을 문헌정보 서비스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문헌정보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SSA에는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에 접근하고 도서 및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는 실물 공간적 기능과 더불어 학교도서관의 자료에 접속하고 기술적 환경이 갖추어진 디지털 공간적 기능의 중요성을 모두 중요시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도 학교도서관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위한 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명시되어 있으나 ESSA에 제시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정보원 문서에 대한 접근,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사용 등과 같이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에 제시된 시설과 자료의 기준 등에도 디지털 매체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ESSA에 제시된 바와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학습 및 기술 사용과 같이 보다 학교도서관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학교도서관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ESSA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계획서나 신청서를 개발함에 있어 학교 사서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치원생부터 12학년 학생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 사서에게 연수 및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사서가 교사와 리터러시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 사서가 독서를 포함한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가이며 유치원생부터 12학년 학생의 리터러시 향상에 책임을 갖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미국 학교 사서의 리터러시 역할과 관련한 내용은 국내의 사서교사가 이미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내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는 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로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교육, 교사의 교수학습 지원만을 서술하여 사서교사 등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 독서교육, 기술 역량, 디지털 학습 그리고 정보 리터러시를 사서교사 등의 업무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업무에 대한 문헌정보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ESSA에서는 학교 사서의 협력 활동들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ESSA에서는 주와 지

역 교육기관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 학교 사서를 협력자로 지정하였으며 학교 사서가 학부모나 교사와 협력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ESSA에 제시된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AASL의 성명서나 AASL이 발행한 학교도서관 기준에는 모두 ‘협력’을 학교 사서의 매우 중요한 역할로 강조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사서교사 등이 교사의 교수학습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서교사 등이 다른 교직원과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등에 있어 교사와의 협력은 사서교사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임으로 이를 학교도서관진흥법에 표기하고 사서교사 등이 다른 교직원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연수를 제공하며 교육청 차원에서 사서교사 등이 교직원과 협력할 수 있도록 장학지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ESSA는 3만불 이상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증거 기반에 근거하여 제공된 프로그램과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간의 관련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 기반 강화는 사서교사 등이 그들의 교육활동, 전략, 프로그램 투입의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거나 통계적인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에서 사서교사 등의 업무 성과는 증거에 기반하여 측정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도 논란거리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목적과 같이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서교사 등이 문헌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 단위 학교내의 문헌정보 서비스의 효과를 증거에 기반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근거에 따라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미국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제공되는 몇몇 기금은 경쟁을 통해 제공된다. 이러한 기금활용의 의미는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이나 학교 사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자금이 사용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의 학교 사서 및 학교도서관 지지자들이 주와 지역 교육기관에서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게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많이 위임되었으며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장관의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교육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는 시도교육청의 정책이 학교도서관 정책, 독서교육, 정보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서교사 등은 자신의 업무와 역할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교육적 활동과 프로그램의 계획 및 성과를 지역교육청과 지역사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ESSA에서는 다방면에 걸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SSA에서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은 교육 서비스로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 사서에 의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도서, 자원, 최신 자료, 디지털 학습, 어린이 서비스,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도서관 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가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규

정하고 있다.

이는 다방면에 걸친 교육에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이 문헌정보 서비스의 개념으로 대체가능하다고 하였을 때, 다방면에 걸친 교육과 유사한 범교과 학습 주제로 '문헌정보'라는 새로운 학습 주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문헌정보'를 새로운 범교과 학습 주제로 사용하고 문헌정보 서비스의 내용을 독서, 정보, 디지털 리터러시 등의 내용 요소로 제시한 문헌정보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ESSA를 통해 재인증된 미국의 초중등교육법의 등장으로 학교의 문헌정보 서비스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변화는 향후에 보다 급격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ESSA에는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사서교사, 어린이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도서, 자원, 최신 자료 제공, 도서관, 학교도서관 접속, 디지털 학습 등 문헌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단어가 서술되어 있으며, 개인화된 학습 경험, 증거 기반 평가, 다방면에 걸친 교육, 전문성 개발과 같이 사서교사 등의 전문성과 관련된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초중등교육법의 제정배경, 주요 내용을 문헌정보 서비스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초중등교육법은 저소득층, 유색인종, 영어 학습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 출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켜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방정부의 법률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ESSA는 NCLB에 비하여 주와 지역 교육기관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 지역 교육기관 및 학교에 책무성도 부여하고 있다.

둘째, ESSA에는 개선된 문헌정보 서비스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학교 사서를 교육 서비스의 전문가로 명시하고 있다. 주와 지역 교육기관은 교육활동 시행 계획서나 신청서를 개발할 때, 학교가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어떤 도움을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의 디지털 사용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ESSA는 주나 지역 교육기관이 계획서나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학교 사서들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ESSA에서 학교 사서는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의 전문가로 다른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에게 증거에 기반한 문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SSA를 제정한 목적은 분명하였다. 그것은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유지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ESSA에서 학교 사서는 책임있는 학교 교직원의 일원으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교사를 포함한 다른 교직원과 협력하고 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서교사 등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직원의 일원으로 증거에 기반한 문헌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따라서 사서교사 등은 자신의 업무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피드백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정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독서뿐만 아니라 정보활용능력은 우리사회에도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고 학업격차와 더불어 정보격차를 줄이는 일도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문헌정보 서비스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를 증거에 기반하여 확인하고 이를 현장에 도입하여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 교육부. 2015a.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부. 2015b.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0]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 교육부. 2015c.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권은경. 2004.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개정과 사서교사제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95-118.
- 노기호. 2007. 미국의 교육복지정책과 법제의 동향. 『公法研究』, 35(3): 27-55.
- 박윤주. 2017. 미국 모든학생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의 학교건강안전 고찰. 『대한보건의연구』, 43(1): 53-63.
- 법제처. 2014. 민원인 - 사서교사·실기교사 또는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등 관련). <<http://www.law.go.kr/LSW/expcInfoP.do?mode=2&expcSeq=314948>> [cited 2018. 12. 13].
- 변우열. 2017. 한국과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23-51.
- 염철현. 2005. 미국 초·중등교육개혁법 고찰 - 'No Child Left Behind Act'를 중심으로. 『比較教育研究』, 15(3): 57-78.
- 염철현. 2016. 미국의 “모든 학생의 성공법(ESSA)” 제정 및 시사점. 『교육법학연구』, 28(1): 81-101.
- 이원숙. 2011. 일본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거시적 환경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111-136.

- 주미대사관 교육관실. 2007.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동향—연방교육법을 중심으로—. <http://125.60.48.13/home4/dl_files/edu/019/EM027558.pdf> [인용 2019. 1. 8].
- 학교도서관진흥법. 2018. 법률 제15368호.
- AASL. 2016a. *Definition of an Effective School Library Program*. <www.aasl.org> [cited 2019. 1. 8].
- AASL. 2016b. *Preparation of School Librarians*. <www.aasl.org> [cited 2019. 1. 8].
- ALA Washington Office. 2016. *ESSA Opportunities for School Librarians*. <<https://essa.aasl.org/resources>> [cited 2018. 12. 26].
- Every Student Succeeds Act*. 2015. Public Law 114-95. <<https://www.congress.gov/114/plaws/publ95/PLAW-114publ95.pdf>> [cited 2019. 1. 3.].
- Johns, Sara Kelly and Kachel, Debra E. 2017. “ESSA: An Opportunity for School Library Funding.” *Teacher Librarian*, 44(4): 8-11.
-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2002. Public Law 107-110. <<https://www.congress.gov/107/plaws/publ110/PLAW-107publ110.pdf>> [cited 2019. 1. 3.].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4. *NCLB Testing: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s://www2.ed.gov/nclb/accountability/ayp/testing-faq.html>> [cited 2019. 1. 2].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0. *An Overview of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https://www2.ed.gov/about/overview/focus/what.html>> [cited 2019. 1. 10].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a. <<https://www.ed.gov>> [cited 2019. 1. 2].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b. *NCLB—The Federal Role in Education*. <<https://www2.ed.gov/about/overview/fed/role.html>> [cited 2019. 1. 12].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un, Woo-Yeoul. 2017.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chool Library Law of Korea and Jap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2): 23-51.
- Education Office of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USA. 2007. *Educational policy trends in the U.S. federal government—focused on federal education laws*. <http://125.60.48.13/home4/dl_files/edu/019/EM027558.pdf> [cited 2019. 1. 8].
- Kwon, Eun-Kyung. 2004. “The Amendment of Japanese School library Law and The School librarianship in Japan.”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 Science Society*, 38(2): 95–118.
- Lee, Won–Sook. 2011. “A Study for Macro–Environment of Japanese Schoo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2): 95–118.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Notice No. 2009–41.
- Ministry of Education. 2015a, Notice No. 2015–74[Appendix 5] Korean Language Curriculum.
- Ministry of Education. 2015b, Notice No. 2015–74[Appendix 10] Practices(Technical and Family)/Information curriculum.
- Ministry of Education. 2015c. Notice No. 2015–74[Appendix 11] General Principle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4. *civil petitioner – Whether a person who is not eligible for librarian teachers/practical education teachers or librarian staff can work in the school library(relating to Article 12 of the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http://www.law.go.kr/LSW/expcInfoP.do?mode=2&expcSeq=314948>> [cited 2018. 12. 13.]
- Noh, Ki–Ho. 2007. “The Tendency of Educational Welfare Policy and Legal System in U.S.A.” *Public Law*, 35(3): 27–55.
- Park, Youn–ju. 2017. “An Analysis on School Health & Safety in “Every Student Succeeds Act.”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3(1): 53–63.
-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2018. Act No.8852.
- Yum, Chul–Hyun. 2005. “A Study 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America – focused on ‘No Child Left Behind Act’-.”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15(3): 57–78.
- Yum, Chul Hyun. 2016. “A Study on the Enactment of ESSA and Its Implica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28(1): 81–101.